

물은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지만 정작 물의 중요성과 그 성질을 대부분 잊고 산다.

화학적 측면에서 물은 일정한 온도에서는 색도 맛도 냄새도 없는 액체라고 한다. 지구는 바다·호수·하천 등에 의해 표면적의 약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다고 한다. 지하수(地下水)나 지면에 스며드는 것까지 합하면 지구의 물의 양은 13억 360km나 된다. 만일 이것이 지구의 겉면을 둘러싼다고 하면, 땅은 모두 물에 잠기며, 그 깊이가 2.6km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물의 양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물과 싸워온 인류의 역사

지구에서 가장 물이 많이 모인 곳은 바다이다. 바닷물은 태양의 열에 의해 수증기로 변하고, 이것이 상승기류(上昇氣流)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대기(大氣) 중에서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진다.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떨어진 물의 일부는 바다로 흐르고,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地下水)가 된다. 또 일부는 다시 수증기가 되어 공기 속에 섞이게 된다. 거기에서 또 다시 태양열(太陽熱)의 작용으로 바다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또 다시 바다에 닿는 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은 몸무게의 약 70%가 물로 되어

이선국 칼럼

칼럼위원(시인, 죽왕면장)



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있다. 특히 혈액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의 몸 안을 돌면서 물질 운반의 구실을 한다. 물의 일부는 숨을 내뿜을 때 수증기로서, 나머지는 땀이나 배설물로서 몸 밖으로 나가 역시 자연계로 돌아간다.

또 물은 인체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구실도 한다. 따라서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몸 안의 물이 15% 이상 없어지면 목숨이 위태롭고,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셔도 죽는 수가 있다고 한다.

4대문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문명 역시 물과 관련이 깊다. 즉, 사람은 물론 농사나 가축(家畜)을 기르는 데 필요한 물을 끊임없이 대기 위해 관개나 수리 시설을 이루고 교통로로 이용하는 등 물을 잘 이용함으로써 인간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물을 이용하는 동시에 물의 피해를 막는 '물과 싸워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일정한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아내어 천문학을 발달시켰고, 또 수리사업(水利事業)을 위한 우수한 기하학 등의 수학과 물리학도 발달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물은 직접·간접으로 문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물은 변함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 물의 양과 기세에 따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몇 년 전 태풍 루사와 매미 때 악몽 같은 수해를 겪었다. 또한 최근 일본 동해안의 지진해일과 전 세계에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홍수대란은 인간에게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물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령 같이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예부

터 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재라도 남지만 물이 휩쓸고 간 자리는 흔적도 없다고 한다. 그만큼 물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물의 모양은 자유자재로 변한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으로,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 모양으로,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으로 물은 거침없이 변한다. 또 흐르던 물길이 막히면 돌아가든지 넘어간다. 그러지 않으면 물은 그 자리에 멈추기도 한다. 그렇지만 결코 물의 성질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상 위에 놓아 둔 컵 속의 물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 물이 표면에서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공기속의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컵의 벽에 물방울을 만들기도 하는 등 활발한 변화를 일으킨다. 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물은 언제나 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머물러 있지만 끊임없이 활동하는 물

우리에게 한결같은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물. 물 같은 존재로 사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색깔과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물처럼 언제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더욱 낮추고, 누군가에게 항상 필요한 물 같은 삶, 머물러 있지만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런 삶을 배우고 싶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문) 갑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갑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

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거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인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위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게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